

# 기금관리규정

**제1조 (목적)** 이 규정은 서울신학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라 한다)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본 대학교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대학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 (정의)** 이 규정에서 "기금"이라 함은 본 대학교가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「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」에 의하여 설치·운영하는 적립금을 말한다.

**제3조 (기금의 관리 및 운용 원칙)** ① 기금은 원금이 감소 또는 소멸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단 대손으로 인한 손실은 예외로 한다.

② 적립기금은 기금의 원금보존과 인플레이션 상쇄를 위해 원금의 2%나 대한민국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을 원금에 곱한 금액 중 높은 금액을 자금의 원금으로 매년 재적립한다. (단 대한민국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최고 3%까지 적용한다.)

③ 위항에 대해 사용에 대한 기한이 명시된 기금이나, 기부자와의 양해각서가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목적에 우선 적용하여 적립목적이나 기부자의 의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.

**제4조 (기금의 관리 및 운용)** ① 기금은 본 대학교의 투자정책지침서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.

② 기금의 관리에 관한 사무는 본 대학교 총무처장이 행한다.

③ 위험관리는 본 대학교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④ 이사회 산하 기금자문위원회의 조언에 성실히 임한다.

**제5조 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** ① 총장은 회계연도마다 투자정책지침서를 작성하여야 하고,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총장은 제1항의 기금 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6조 (투자정책지침서)** ① 투자정책지침서(이하 “지침서”라고 한다)는 별도로 정하되 자산운용에 대한 투자정책을 기술하여야 하며 아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자산운용의 목적과 체계
2. 목표수익률과 허용위험
3. 자산배분정책
4. 위험관리정책
5. 내부 운용 및 외부운용 기준
6. 성과평가와 결과보고
7. 관련 법률 및 기타 주요의사결정사항 등

② 지침서는 기금관리위원회가 작성하고 서울신학대학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**제7조 (기금관리위원회)** ①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-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  - 1. 기금운용 계획의 수립
  - 2. 자산배분-직접투자 및 간접투자 비율
  - 3. 외부 자산 운용기관의 선정 및 교체
  - 4. 자산운용 평가 및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
  - 5. 그 밖에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③ 위원회는 총무처장, 기획처장의 당연직 위원과 총장이 위촉하는 2명의 위원 (외부자 1명 포함)으로 구성한다.(총4명)
-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총무처장으로 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- ⑤ 회의는 재적위원 2/3의 출석과 출석위원 2/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⑥ 위원회에는 회의록 작성 및 기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, 간사는 총장이 임명한다.

**제8조 (기금운용의 성과분석)** ① 총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.

- ② 성과평가는 자산운용계획 수립과 운용을 담당하는 조직과 독립된 별도의 조직, 위원회 또는 외부 전문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③ 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운용성과 분석결과를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0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규정의 개폐) 이 규정의 개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③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이전의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은 이 규정에 의해 진행된 것으로 본다.